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영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718

발의연월일: 2021. 12. 7.

발 의 자:하영제·김용판·박덕흠

구자근 • 조명희 • 이주환

조경태 · 김석기 · 윤창현

배현진 · 김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그간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·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음.

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,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 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,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·외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,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조종사 한정심사 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에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추가함(안 제38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 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시험의 실시 및 면제)	제38조(시험의 실시 및 면제)
①~ ② (생 략)	①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	3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	
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	
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	
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
	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
	을 이수한 사람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